

적격 물적분할시 과세이연에 대한 시가 승계와 장부가액 승계방식의 타당성 검토

조주희* · 최기호**

〈요 약〉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유형 중 하나이다.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수령하는 교환거래이므로 분할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며 동시에 자산처분익을 계상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책으로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법인이 인식해야 하는 자산처분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에게 자산처분익의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법으로는 (1)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거나(장부가액 승계) (2)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되 자산처분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시가 승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당초 장부가액 승계로 과세이연을 허용하였으나 이중과세 논란으로 인하여 현재는 시가 승계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 독일, 미국, 일본 등은 모두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도 적격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모두 장부가액 승계를 통해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이연에 대한 시가 승계방식은 해외입법례나 다른 적격구조조정 방식에 비해 예외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적격 물적분할 이후 후속적인 적격구조조정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경우 시가 승계방식은 장부가액 승계방식에 비하여 과세상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불리해지면서 사후관리만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물적분할에는 대부분 후속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른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본 논문에서는 적격 물적분할에서 시가승계방식보다는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과세를 이연시켜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까지 제시하여보았다.

〈주제어〉 적격 물적분할, 시가승계, 장부가액승계, 과세이연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jue1014@naver.com,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cgh@uos.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9년 12월 31일 1차수정일 2020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2일

I. 머리말

우리나라 구조조정세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합병 및 분할 등의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자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었고¹⁾, 도입 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2009년 전면적인 개정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에 이르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하나의 방법인 물적분할은 하나의 법인이 자산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이 소유하는 형태이다. 이런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받는 교환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원칙상 분할법인은 자산 양도에 대한 처분이익을 계상하고 수령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시가로 계상한다. 또한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계상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요건을 충족한 물적분할(이하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법인이 계상해야 하는 자산처분익에 대해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적격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의 자산처분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이다(이하 “장부가액 승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처분익을 인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둘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서 분할법인의 자산처분익에 해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설정해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것이다(이하 “시가 승계”).

두 방안 중 외형상 장부가액 승계가 시가 승계보다 덜 복잡하다. 그렇지만 장부가액 승계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만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면 이연된 자산처분익에 대해서 과세되면서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다시 자산처분익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이다. 반면 시가승계는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경우 그리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환입되면서 과세되지만 압축기장충당금 한도 내에서 과세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은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적격 물적분할 시 시가 승계방식을 통해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시가 승계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7년 최초 구조조정세제가 출발할 당시에는 시가 승계방식이었지만 2010년 법인세법 전면개정과 함께 장부가액 승계로 바뀌었다가 다시 2011년 시가 승계로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시가 승계와 장부가액 승계방식이 바뀌어왔다는 것은 두 방식간의 선택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 양인준·박훈, 2014, 세법상 물적분할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0권 제2집, 2014, p.319

물적분할 외에 또 다른 적격 구조조정인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분할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모두 장부가액 승계를 통해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그리고 독일,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 모두 장부가액 승계를 통해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 시가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인세법 내에서 볼 때에도 예외적인 것이며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예외적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과연 적격 물적분할에 대한 시가 승계방식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자산 등을 시가로 승계하도록 한 현행 적격 물적분할의 과세방식은 이중과세를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기업이 적격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여러 차례 수행할 경우에는 장부가액 승계방식에서도 이중과세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 해소라는 시가 승계방식의 장점은 사라지게 되며 오히려 적격 구조조정이 2차례 이상 진행될 경우에는 시가 승계방식에서의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둘째, 시가 승계방식에서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 등을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이 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시마다 처분 비율만큼 익금산입하여 환입하여야 하므로 설정 및 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여러 차례 구조조정이 진행될수록 더욱 커진다.

셋째, 적격 물적분할 후 몇 차례의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의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유지 및 관리가 복잡하여 의도치 않은 관리상의 오류, 탈루 등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시 처분 사실을 분할법인에 알려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가 있어서 부담이 가중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시가 승계의 문제점이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한 차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²⁾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적격 물적분할시 과세이연은 장부가액 승계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2) 적격 물적분할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설문조사 등의 별도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저자들이 면담한 몇 명의 구조조정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서 구조조정은 일상적인 것이며 한 차례로 구조조정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해주었다. 이런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하여 2011년 이후 분할보고서를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법인들의 분할보고서를 찾아보았다. 모두 387건의 분할보고서가 공시되었는데 이중 동일한 상장법인이 2회 이상 분할보고서를 공시한 경우는 212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9건의 분할보고서를 공시한 기업도 있었다. 분할 외에 합병 등의 구조조정도 상시 시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최소한의 비율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적격구조조정이 반복해서 시행된다는 현실이 어느 정도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내리고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법인세법 개정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와 같이 물적분할에서 자산의 승계방식의 문제점을 다룬 연구로는 김천웅과 김원배(2011), 전병욱(2011) 그리고 신찬수와 박성배(2011)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 2011년 이전 적격 물적분할에서 장부가액 승계방식을 규정한 과거 법인세법 하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고 시가 승계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11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시가 승계방식으로 전환된 것을 본다면 사실상 이들 논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적격 물적분할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논문에서는 구조조정이 연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시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적격 물적분할에 대한 보다 적절한 과세이연방식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며 기업구조조정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적격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

1. 적격 물적분할과 과세이연

물적분할은 하나의 법인에서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적분할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법인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가 신설법인으로 승계되고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법인이 소유하게 된다. 여기에서 분할 후 기존법인은 분할법인이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다.

이러한 물적분할을 하나의 거래로 보자면 분할법인 입장에서는 일부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수령하는 거래이고 분할신설법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산을 취득한 거래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시행령 72조에서는 현물출자에서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한 자산의 시가로 계상하며 마찬가지로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시가로 취득원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물적분할로 시가 1,000원(장부가액 100원)인 토지를 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 주식 전부(10주 액면 10원)를 소유한다고 하자. 이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서 물적분할을 분개하면 다음과 같다.

<분개 1> 일반적인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

분할법인A	차) 투자자산	1,000	대) 토 지	100
			토지처분이익	900
분할신설법인B	차) 토 지	1,000	대) 자 본 금	100
			주식발행초과금	900

위 분개1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은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초과하는 경우에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 적격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방식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허용한다(법인세법 제46조2항). 이렇게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 장부가액 승계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이렇게 되면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앞선 예를 다시 한 번 보자면 장부가액 승계를 통한 과세이연에서는 앞선 <분개 1>에서와는 달리 토지가 장부가액인 100원으로 승계된다. 이를 분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분개 2> 장부가액 승계를 통한 적격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분할법인A	차) 투자자산	100	대) 토 지	100
분할신설법인B	차) 토 지	100	대) 자 본 금	100

만일 과세이연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다시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과세가 된다. 앞선 예에서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0원에 처분하거나 B법인이 토지를 1,000원에 처분하게 되면 각각 900원의 처분이익이 생기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된다.

<분개 3> 장부가액 승계를 통한 적격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종료

분할법인A의 주식처분	차) 현 금	1,000	대) 투자자산	100
			투자자산처분익	900
분할신설법인B의 토지처분	차) 현 금	1,000	대) 토 지	100
			토지처분익	900

<분개 3>에서 볼 수 있듯이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면 과세이연은 종료되고 처분익은 다시 과세된다. 그런데 당초 적격 물적분할로 이연된 분할법인의 처분익이 차후 주식처분 혹은 자산처분시 독립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원래 과세이연된 처분익이 두 번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장부가액승계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나. 시가 승계

앞선 장부가액 승계와는 달리 시가 승계방식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한다. 그리고 시가 승계로 나타나는 분할법인의 자산처분익에 대해서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를 이연한다. 앞선 예에서 보자면 이는 다음과 같이 분개된다.

<분개 4> 시가 승계를 통한 적격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분할법인A	차) 투자자산	1,000	대) 토 지	100
			토지처분익	900
	차) 토지처분익	900	대) 압축기장충당금	900
분할신설법인B	차) 토 지	100	대) 자 본 금	100

<분개 4>에서와 같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다시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환입되고 이는 이연된 자산처분익이 다시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선 예에서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0원에 처분하거나 B법인이 토지를 1,000원에 처분하게 되면 각각 900원의 처분익이 생기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된다.

<분개 5-1> 시가 승계를 통한 적격 물적분할의 과세이연시 분할법인A의 주식처분

투자자산처분	차) 현 금	1,000	대) 투자자산	1,000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	차) 압축기장충당금	900	대) 압축기장충당금환입	900

<분개 5-2> 시가 승계를 통한 적격 물적분할의 과세이연시 분할신설법인B의 자산처분

자산처분	차) 현 금	1,000	대) 토 지	1,000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	차) 압축기장충당금	900	대) 압축기장충당금환입	900

<분개 5-1>과 <분개 5-2>를 보면 앞선 <분개 3>에서와 같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후속적인 자산처분으로 과세이연은 종료되며 이연되었던 처분익이 다시 과세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은 충당금 금액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이연되었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분개 3>

에서와 같이 두 번씩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한 경우 분할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해야 한다(<분개 5-2> 참조). 비록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적 실체가 다른 상황에서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받은 자산의 변동을 보고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이에 맞추어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 사후관리 부담이 생긴다.

III. 적격 물적분할 과세이연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

1. 현행 규정

가. 시가 승계방식을 통한 과세이연

우리나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적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그 자산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시가 승계방식을 통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과 환입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7조에서는 적격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익금으로 환입한다.

다. 분할신설법인의 보고의무

법인세법 제47조에서는 만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개월 이내 분할법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앞서 설명한대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분할법인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해야하기 때문이다.

2. 과세이연 규정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적격 물적분할의 과세이연방식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적격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방식에 대한 규정은 2009년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처음에는 분할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시가로 승계하도록 하였다가 2010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

로 승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과 1년 만인 2011년 12월에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도록 다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적격 물적분할을 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여 양도 차익을 손금 산입하도록 하는 방식은 물적분할 규정이 신설된 이래 계속하여 취하고 있는 방식이나,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도록 하다 이를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시가 승계방식으로 변경하여(시가 승계 → 장부가액 승계 → 시가 승계) 현행에 이르고 있어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 승계방식에 대한 과세당국의 고민이 상당했음을 암시한다.

3. 다른 적격 구조조정 세제와의 비교

가. 적격 합병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4조에서는 적격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합병법인도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 받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적격 합병의 과세이연을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적격 인적분할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6조3에서는 적격 인적분할의 과세특례를 규정한다. 이 경우에도 적격 합병에서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격 인적분할의 경우에도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적격 물적분할 규정과의 비교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적격 합병과 적격 인적분할시 모두 장부가액 승계방식을 통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지만 적격 물적분할에서만 시가 승계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격 물적분할에서 시가 승계방식을 취하는 것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과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처분에 대해서 각각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임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이중과세문제는 적격 합병과 적격 인적분할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즉 적격 합병에서도 피합병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면 최초 이연된 자산처분이익이 다시 과세된다. 이는 적격 인적분할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한 이중과세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적격 물적분할에서만 시가 승계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주요국의 적격 물적분할 과세이연방식 및 시사점

1. 독일

독일 조직재편법(Umwandlungsgesetz)상 물적분할은 양도회사가 재산의 일부 또는 여러 부분을 기존의 양수회사 또는 신설된 양수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기존의 양수회사 또는 신설된 양수회사는 재산을 양도한 회사에게 양수회사의 지분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³⁾ 이는 재산의 일부만 포괄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부분적 포괄승계에 해당한다.⁴⁾

즉 “양도회사는 물적분할을 통해 재산의 일부 또는 여러 부분을 양도하면서 대가로 양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므로 이는 교환유사거래 내지 양도 및 취득거래에 해당하는바 이렇게 이전되는 재산에 포함된 미실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직재편세법은 물적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나 공동사업지분을 물적분할 하거나 물적회사 또는 산업공제조합에 대한 지분을 분할하면서 대가로 양수회사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등 요건⁵⁾을 갖추면 그 미실현손익에 대한 인식을 이연하여 주고 있다.”⁶⁾

가. 양수회사의 취득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독일 조직재편세법은 “양수회사가 분할 재산을 평가한 가액이 동시에 양도회사의 양도가액 및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⁷⁾ 하고 있어 양수회사의 평가액이 양도회사의 신주 취득가액이 되고,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양수회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하는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회사의 양도가액 및 세무상 이익은 달라진다.

그런데 양수회사는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을 원칙적으로 통상가액⁸⁾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나 공동사업지분을 물적분할 하거나 물적회사 또는 산업공제조합에 대한 지분을 분할하면서 그 대가로 양수회사로부터 신주를 교부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산을 장부가액 또는 중간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간가액이란 통상가액과 장부가액의 중간액을 의미한다⁹⁾.

3) 조직재편법 제123조 제3항

4) 황남석, 2009,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에 관한 조직재편세법상의 과세제도 연구, 법조협회 제631호, p.305 이하

5) 조직재편세법 제20조 제2항 제2문

6) 황남석, 2010, 주식회사 분할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박사학위논문, pp.107~108

7) 조직재편세법 제20조 제3항 제1문, 제21조 제2항 제1문

8) 우리의 시가와 유사하다.

따라서 양수회사가 취득할 재산을 통상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양도회사는 분할 당시 양도차익이 전액 실현되게 되고, 중간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일부만 실현하게 되며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양도손익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나. 양도회사의 양도가액 및 양도손익

앞서 본바와 같이 양도회사의 양도가액은 양수회사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양도회사의 양도손익도 양수회사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양도회사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산을 양도 후 양수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양수회사의 신주 또한 양수회사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결국 양도회사의 자산의 양도가액과 양수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양수회사의 신주가액은 동일하다.

따라서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양도회사의 양도손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양도회사가 양수회사의 신주를 양도하면 물적분할 당시의 미실현이익이 실현되고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장부가액만큼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물적분할 당시 양도회사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만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⁹⁾

반면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통상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물적분할 당시 양도회사는 자산의 이전에 대한 양도손익이 인식되어 과세되지만 양수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양수회사의 신주도 통상가액으로 평가되므로 물적분할 후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양도회사가 양수회사의 신주를 양도하더라도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미국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상법상 독립된 제도로 회사분할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독립된 회사분할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¹¹⁾

우리 물적분할은 양도회사가 하나 이상의 사업부문을 양수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수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로 정의할 수 있는데 미국 회사법상으로도 회사는 자산을 처분하면서 그 대가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어¹²⁾ 우리 물적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미국 세법은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과세를 이연하여 주고 있으므로,¹³⁾ 미국의 출자가 우리의 물적분할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하

9) 황남석, 앞의 논문, p.114

10) 황남석, 앞의 논문, pp.119~128

11) 황남석, 2011,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3호, p.263

12) 황남석, 2011,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3호, pp.266~267

13) 황남석, 2009, 미국 내국세입법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조세법 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

미국 세법상의 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양도회사의 손익의 인식 및 주식의 기준가액

미국 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적격, 즉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요건인¹⁴⁾ 출자요건(출자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 재산요건(용역을 제외한 모든 재산), 주식요건(출자의 대가로 양수회사의 주식만 취득), 지배요건(양도회사는 출자 후 양수회사를 지배), 사업목적 요건(조세회피 외 사업목적 필요), 사업계속성 요건(조직재편으로 재산을 취득한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그 사업재산의 중요 부분을 계속하여 사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양도회사(출자자)는 미국 세법 제358조 및 제362조에 따라 대체기준가액(substituted basis)이 적용되어 손익의 인식이 이연되고¹⁵⁾, 이연한 손익은 물적분할 후 양도회사가 양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양수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때 인식된다.¹⁶⁾

미국의 출자제도는 우리의 물적분할과 유사하여 양도회사, 즉 출자자가 출자로 인해 출자한 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기준가액은 교환기준가액(exchange basis)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환기준가액이란 교환에 제공한 재산의 기준가액이 교환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의 기준가액으로 승계되는 경우의 기준가액을 의미¹⁷⁾하므로 결국 우리의 장부가액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경우도 출자자가 출자로 인해 상대방 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양수회사가 취득하는 자산의 기준가액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출자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기준가액은 승계기준가액에 의하며, 승계기준가액이란 양도회사(출자자)의 기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¹⁸⁾으로 즉, 앞서 본바와 같이 양도회사가 교환기준가액에 의하면 양수회사는 그 가액을 그대로 승계한 가액으로 한다.

미국 세법 제358조 및 제362조에 의하면 출자자의 출자재산 보유 당시의 기준가액이 양수회

세법학회, p.57

14) 내국세법 제351조

15) 황남석, 2010, 주식회사 분할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박사학위논문, p.161-169
대체기준가액은 교환기준가액과 승계기준가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장부가액과 비슷한 개념이며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용기준가액이 있는데 비용기준가액은 우리의 시가로 비슷한 개념이다.

16) 황남석, 앞의 논문, p.169

17) 황남석, 앞의 논문, p.170

18) 황남석, 2009, 미국 내국세법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조세법 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p.82

사에 승계되고 양수회사 주식으로도 승계되므로 양수회사가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출자자가 양수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출자 당시 출자재산의 시가와 장부가 차이만큼 출자자와 양수회사가 각각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되는데¹⁹⁾, 이를 조정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미실현손실의 경우 이중으로 소득통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규정²⁰⁾은 있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격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일본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9에서는 “분할형분할은 분할에 의해 분할법인이 교부받는 분할 승계법인의 주식 및 기타의 자산(‘분할대가자산’이라 함)의 전부가 분할일에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교부되는 경우의 분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2호의10에서는 “분사형분할은 분할에 의해 분할법인이 교부받은 분할대가자산이 분할일에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교부되지 않는 경우의 분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분할형 분할은 우리의 인적분할과 대응되고, 분사형 분할은 우리의 물적분할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물적분할과 같은 일본의 분사형 분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가. 양도회사의 분할사업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일본의 경우도 물적분할의 대가로 양도회사(분할법인)에게 양수회사(분할승계법인)의 주식 또는 양수회사모회사(분할승계모법인)의 주식 이외의 자산이 교부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통요건 아래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물적분할의 경우 공통요건의 충족만,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간(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간 50% 초과 100% 미만의 지분관계가 있는 것)의 물적분할의 경우 위 공통요건에 주요 자산 및 부채의 승계요건과 종업원 승계요건, 사업계속성요건과 고용승계요건도, 공동사업목적을 위한 물적분할의 경우 사업관련성요건 및 사업규모요건 또는 경영참가요건, 주식계속보유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격(분사형)분할²¹⁾에 해당하고, 적격 분사형 분할 즉 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일본법인세법 제62조 제1항(합병 및 분할에 의한 자산 등의 시가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회사(분할법인)는 양수회사(분할승계법인)에 이전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 직전의 장부가액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²²⁾ 규정하고 있다.

19) 황남석, 앞의 논문, p.82

20) 내국세입법 제362조(e), 황남석, 앞의 논문, p.82

21) 일본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11

22) 일본법인세법 제62조의3 제1항

나. 양수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양수회사(분할승계법인)는 양도회사(분할법인)로부터 취득하는 자산과 부채의 취득가액은 양도회사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²³⁾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에 양수회사의 주식을 교부한다. 따라서 양도회사의 승계하는 자산 및 양수회사의 승계받은 자산,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에 교부하는 주식은 모두 장부가액으로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비적격분할의 경우 양도회사의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 및 양도회사가 양수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과 분할교부금,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과 부채는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²⁴⁾

4. 시사점

독일 및 미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적격 물적분할을 위한 각 국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는 모두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양도회사가 양수회사로부터 교부받는 주식 또한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국은 모두 적격 물적분할의 과세이연방식으로 장부가액 승계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적격 물적분할의 과세이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시가 승계방식은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 비추어보더라도 매우 독특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V. 후속적인 구조조정에서 적격 물적분할 시가 승계방식의 문제점

적격 물적분할에 대한 시가 승계방식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게 된다.

1.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후속적인 적격 구조조정시 세부담 증가

시가 승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물적분할 제도 하에서는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후속적인 적격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이 처분된 것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이연이 종료된다. 그러나 장부가액 승계방식 하에서는 물적분할 후 적격 구조조정이 있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분할과 같은 다른 적격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장부가액 승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적격

23) 일본법인세법 제6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4

24) 일본법인세법 제62조

물적분할 이후 후속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적격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면 현재의 시가 승계방식이 장부가액승계방식에 비해서 갖고 있는 이중과세 해소라는 상대적 장점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후속적 적격 구조조정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서 적격 물적분할 이후 한 차례의 적격 구조조정에 한하여 과세이연을 유지시켜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2차례 이상 적격 구조조정이 이어질 경우에는 여전히 세부담 면에서 시가 승계방식이 장부가액승계 방식에 비하여 불리하다. 또한 한 차례만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 승계방식은 장부가액승계 방식과 세부담이 동일해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중과세 해소라는 당초의 장점은 사라진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신규사업 진출, 주력사업 교체, 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축소 등을 행함으로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은 합병 후 분할을 하거나 분할 후 다시 분할을 하는 등 계속하여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마련이다.²⁵⁾ 이렇게 물적분할 후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감안하면 현행 시가 승계방식의 적격 물적분할 규정은 적격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2. 압축기장충당금 관리의 문제

현행 적격 물적분할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분할법인은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적격 물적분할 이후 또 다른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과 같이 후속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경우에 압축기장충당금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만약 분할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등을 처분할 경우 처분시마다 처분한 사업연도에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환입하여야 한다.

25) 예를 들어 2011년부터 SK텔레콤은 다음과 같은 분할과 합병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사례는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2011.10.01. SK텔레콤을 분할법인으로 하고 SK플래닛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물적분할 실시.

2013.03.01. SK플래닛은 다시 ㈜매드스타트를 흡수합병함.

2015.07.01. SK플래닛은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설립하고 이는 다시 SK 브로드밴드와 합병함.

2016.04.05. SK플래닛 LBS사업 및 휴대폰인증부가서비스를 인적분할하여 SK텔레콤과 합병함.

2017.09.04. SK플래닛을 물적분할하여 11번가를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함.

2017.12.01. SK브로드밴드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SK스토어를 설립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times \{(\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1} \times \textcircled{2})\}$

$$\begin{aligned} \textcircled{1} &= \frac{\text{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text{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등의 장부가액}} \\ \textcircled{2} &= \frac{\text{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text{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승계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 \end{aligned}$$

위와 같이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한 과세이연방식은 처분이 있을 때 마다 처분액비율만큼 익금산입을 하여야하므로 수십억, 수조원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각 처분이 있을 때마다 익금산입을 산정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관리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 등 적격 구조조정을 할 경우 최초 적격 구조조정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적격 구조조정으로 승계하는 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하거나 적격 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을 승계받은 법인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적격 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 승계법인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 승계법인이 적격 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자산 승계법인이 적격 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시마다 새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처분비율만큼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 익금산입하여 환입하여야 하고,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 승계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사이 자산 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 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나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여 환입하여야 한다.

즉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처분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이 있을 때 마다 환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물적분할이 향후 구조조정 과정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몇 차례의 구조조정을 한 기업의 경우 압축충당금의 설정 및 관리가 어려워 의도치 않은 관리상의 오류, 탈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압축기장충당금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가가치 창출 없는 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 여부를 분할법인이 알 수는 없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 사실을 알려야 하고,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

의 처분 사실 통지를 통해서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하여야 하는 등 압축기장충당금을 관리하는 것이 분할법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즉 현행 적격 물적분할은 시가 승계에 따른 과세이연 방식을 취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 및 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 및 관리상의 어려움, 비효율성 등이 초래되고 있다.

3. 사후관리의 문제

앞 절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한 과세이연방식은 분할 당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 비율만큼 익금산입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시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킨다.

그런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시 처분 사실을 분할법인에 알려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나 분할신설법인에게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 세무상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과 익금산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분할법인에게 처분 사실을 알리도록 한 규정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경제적 단일체로 보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것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데, 적격 요건을 충족함에도 시가로 승계하도록 한 것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인바 이는 적격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안에서 모순된 규정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규정은 후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다.

4. 다른 적격 구조조정세제와의 과세형평성 문제

구조조정세제는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기점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말 선진국형 구조조정 세제로 전면개정을 하였으며, 정부는 구조조정 세제를 통해 첫째, 조직재편 지원세제 정비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둘째, 구조조정 세제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조직재편 유형에 대하여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과세 중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2009년 말 법인세법에서 구조조정을 ‘양도거래’ 과세체계로 재정립하였다.²⁶⁾

26) 최혜원, 2017, 구조조정 세제의 조세회피 유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법학회 제2권 제2호, p.95

현행 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비적격 물적분할과 같이 자산 등을 양도하는 분할법인이나 그 자산 등을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모두 시가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도 시가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자산 등을 양도하는 분할법인은 분할 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나 이를 손금산입하고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함으로 과세를 이연하고, 이렇게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 등을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이 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환입하여 익금산입함으로 분할 당시의 양도차익이 그 자산 또는 주식의 실제 처분이 있는 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분할신설법인 또한 자산 등을 시가로 승계받기 때문에 해당 자산 등의 처분이 있는 때 시가와 처분가액의 차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분할법인이 승계한 자산 등에 대하여 분할법인은 장부가액과 시가에 대한 양도차익이, 분할신설법인은 시가와 처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이 각각 과세된다.

그러나 현행 적격 물적분할과 달리 현행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분할의 경우 자산 등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있어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은 구조조정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을 처분시 합병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적격합병이나 적격 인적분할을 선택한 경우의 합병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적격 물적분할을 선택할 경우의 분할신설법인보다 장부가와 시가만큼 세금을 더 부담한다.

그렇다면 적격 물적분할 방식과 적격합병과 적격 인적분할의 방식간의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적격 물적분할의 시가 승계방식으로 인해 구조조정 방식간 과세 중립성 및 형평성이 위배된다.

VI. 적격 물적분할 과세이연에 대한 장부가액 승계방식 적용 검토

1.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전환의 필요성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적격 물적분할 과세체계는 후속적인 구조조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시가 승계방식으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간의 과세 중립성 및 형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을 통한 지나치게 복잡한 과세이연방식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압축기장충당금 관리의 어려움 및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으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시 처분 사실을 분할법인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과 적격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 구조조정 할 경우 최초에 한해서만 과세특례를 주는 것으로 인해 적격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장부가액 승계에 비해서 시가 승계방식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부가액 승계방식이 갖고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는 다른 적격 구조조정방법인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분할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²⁷⁾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는 기업의 자산과 주식이 분리되어 있는 회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취득한 이후 회사가 성장하여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경우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가 자산을 처분한다면 주식처분익과 자산처분익이 모두 과세가 된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에 대한 권리가 주식으로 나타내어지고 회사와 주주가 어차피 별도의 법적 실체라면 이중과세 문제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비록 적격합병 및 적격 인적분할의 장부가액 승계 방식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중과세 문제보다 장부가액 승계로 인한 과세방식 및 세무처리가 간명하다는 점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지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장부가액 승계 방식을 택하는 것이며, 독일 및 미국, 일본에서도 시가 승계 방식보다 장부가액 승계 방식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아 적격 물적분할의 경우도 장부가액 승계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인바, 우리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 승계방식도 시가 승계 방식에서 장부가액 승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적격 물적분할 자산의 승계 방식을 시가 승계 방식에서 장부가액 승계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적격 물적분할의 경우도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복잡한 과세이연방식을 취하게 되지 않고, 압축기장충당금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 비효율성 등도 발생하지 않으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을 처분시 처분 사실을 분할법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병을 하든,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을 하든 적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동일한 과세방식을 취하게 되어 구조조정세제가 적격으로 할 경우 일관성 있는 과세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적격 물적분할 자산의 승계 방식도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변경해야한다.

즉 적격 물적분할 과세이연을 위한 장부가액승계 방식은 시가 승계방식에 비하여 과세방식 및 세무처리가 간명해져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더 부합하는 점과 우리 구조조정세제가 “적격”요건을 충족시 일관된 과세방식을 취하게 되어 통일된 과세체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과 그로 인해 구조조정 방법 간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 사후관리의 통일성이 유지된

27) A, B 두 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새로운 C법인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A, B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C법인으로 승계된다. 그리고 A, B 법인의 주주들은 추가과세없이 소유하던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C법인 주식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만일 C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거나 A, B법인의 주주들이 새로 취득한 C법인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과세된다. 따라서 적격 물적분할과 동일한 이중과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는 점, 적격 물적분할 후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속하여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점 등 더 나은 과세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현행 시가 승계방식을 장부가액승계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2. 장부가액승계 방식으로의 세법 개정안

적격 물적분할의 과세이연을 현행 시가 승계방식에서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다면 그에 따라 법인세법과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개정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분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비록 그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적격 물적분할의 독립적인 규정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개정방향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후자인 독립적인 규정을 갖추는 방향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합병과 인적분할의 경제적 동기는 물적분할과 다를 수 있음에도 물적분할에서 합병이나 인적분할의 규정을 준용할 경우, 향후 다른 경제적, 법적 동기에서 합병이나 인적분할 규정이 바뀌게 될 때 물적분할 규정도 영향을 받게 되며 반대로 물적분할만의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개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다(<부록1>과 <부록2> 참조).

본 논문 부록에서 제시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및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같은 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및 제46조의3(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즉 적격합병과 적격인적분할 규정의 순서를 참고하여 물적분할 규정에 적용하되 기존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규정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모두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다. 개정안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적격 물적분할의 경우도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분할과 같이 합병법인이나 인적분할법인이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제2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도록 하며, 기존 법인세법 제47조의 조항 순서를 법인세법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제46조의3 규정의 순서와 동일하도록 변경하거나 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안 또한 적격합병 및 적격인적분할 시행령 규정 순서를 참고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 부록에서 제시하는 개정안은 적격 물적분할도 적격합병 및 적격인적분할과 규정방식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그 순서를 참고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VII. 결 론

구조조정세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에 이르게 되었다. 현행 물적분할의 과세는 적격 물적분할도 비적격 물적분할과 같이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도록 하면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등의 방법으로 과세이연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 및 관리에 있어 다소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구조조정세제 중 적격 물적분할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현재 재의 시가 승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현행 적격 물적분할 과세는 시가 승계 방식으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간의 과세 중립성 및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을 통한 지나치게 복잡한 과세이연 방식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 및 압축기장충당금 관리의 어려움,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으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시 처분 사실을 분할법인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과 적격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 구조조정 할 경우 최초로 한해서만 과세특례를 주는 것으로 인해 적격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 특례 효과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시가 승계 방식에서 장부가액 승계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시가 승계 방식에서 장부가액 승계 방식으로의 변경은 우리 구조조정세제가 적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구조조정세제의 흐름에도 부합한 방식이다. 따라서 현행 시가 승계 방식을 장부가액 승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김천웅·김원배. 2011.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저널 제12권 제2호 : 317-349.
- 양인준·박 훈. 2014. “세법상 물적분할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0-2집 : 319-354.
- 임상엽. 2013. “과세이연 제도의 이면(裏面) : 소급적 이중과세”. 조세학술논집 제29권 제2호 : 199-238.
- 신찬수·박성배. 2011. “개정된 합병·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장협연구 제64호 : 146-172.
- 전병욱. 2011. “적격 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입법과 정책 제3권 제2호 : 49-74.
- 최혜원. 2017. “구조조정 세제의 조세회피 유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법학회 제2권 제2호 : 95-126.
- 황남석. 2009a.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에 관한 조직재편세법상의 과세제도 연구”. 법조협회 제631호 : 302-361.
- 황남석. 2009b. 미국 내국세입법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조세법연구 제15권 제3호 : 57-92.
- 황남석. 2010. 주식회사 분할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남석. 2011.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2권 제3호 : 261-296.

A Study on Taxation of the Qualified Spin - Off in Korea*

Joohee Cho** · Kiho Choi***

〈Abstract〉

In spin-off, the divesting parent company establishes a new subsidiary, transfers some of its assets to the subsidiary, and owns 100% of the shares in the subsidiary. If this spin-off is qualified, taxation on the built-in gain of the assets transferred from the parent to a new subsidiary is deferred. There are two ways to defer taxation : one is to evaluate assets transferred to a new subsidiary with the its book value, and the other is with its market price. Currently, Korean tax law adopts a method of evaluating by market price. We presents the problems of the market price valuation method and argues that it should be converted to the book value valuation method. The reasons for our claim are as follows.

First, after examining tax laws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we found that all countries are adopting a market valuation method in the qualified spin-off.

Second, another method of corporate reorganization in Korea, such as qualified mergers and splits, is also adopting the book value evaluation method. Therefore, if the market valuation method is adopted only in the qualified spin-off, it will be inconsistent with the book value valuation method in other corporate reorganization methods.

Finally, if another subsequent corporate restructuring occurs after spin-off, under the market price valuation method, taxpayers will pay more taxes comparing to the book value valuation method.

〈Key words〉 qualified spin-off, market price, book value, deferred taxation

* This paper is based on the first author's thesis of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at the University of Seoul.

** National Tax Service Seoul Regional Office Tax inspector, jue1014@naver.com, First Author

***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cgh@uos.ac.kr, Corresponding Author

〈부록 1〉 법인세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생략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갖춘 경우(이하 “적격 물적분할”이라 한다) 그 주식 등의 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우에도 적격 물적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적격 물적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와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내용전부개정) ③ 적격 물적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④ 적격 물적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와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부록 1〉 법인세법 개정안 (계속)

현 행	개정안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3호	다.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3호 동일
⑤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	⑤ 적격 물적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부록 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⑧ 생략 → (개정안) 삭제 ⑨ 법 제4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7조 제3항 제2호와 관련된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7조 제3항 제1호와 관련된 경우 3. 법 제4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47조 제3항 제3호와 관련된 경우 나. 법 제47조 제3항 제3호와 관련된 경우	제84조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7조 제4항 제2호와 관련된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7조 제4항 제1호와 관련된 경우 3. 법 제4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47조 제4항 제3호와 관련된 경우 나. 법 제47조 제4항 제3호와 관련된 경우 ② 적격 물적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를 준용하되 제82조의4의 법 제46조의3 제1항은 법 제47조의 제2항으로, 법 제46조의3 제3항은 법 제47조의 제4항으로 본다. (신설)